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9051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사단법인 ○○○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담당변호사 김진욱 외 9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2인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30. 선고 2025나20558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고, 피고는 전자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의 전자제품 판매점(이하 '□□□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들과 전문점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이들에게 피고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 매장은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거나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하고, 위 일반 개인사업자들과 소외 1 회사를 통틀어 '□□□ 매장 운영자'라 한다)가 운영한다.

나. 원고는 2012. 1. 1. 및 2014. 7. 8.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소외 2 회사가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2 회사는 2014. 3. 1. 피고와, 소외 2 회사가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장음악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2 회사는 2014. 4. 무렵부터 2016. 9.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 매장에 음원파일을 제공하였고, 그 매장 운영자는 제공받은 음원파일 중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음원파일(이하 '이 사건 음원파일'이라 한다)을 □□□ 매장의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였다. 피고 및 □□□ 매장 운영자는 원고로부터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소외 2 회사와 이 사건 매장음악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 매장 운영자로 하여금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이용료를 취합하여 소외 2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 매장 운영자의 공연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는 □□□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대리점 유치 또는 피고 제품 판매 증가로 인한 매출 증대 등의 부수적인 이익을 얻었다.

3) 피고의 자회사인 소외 1 회사가 운영한 □□□ 매장의 경우, 소외 1 회사가 위 공연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은 법인 내부에 이익잉여금 등의 형태로 축적되어 언제라도 유일한 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인 피고의 의사에 따라 배당 등 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귀속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4) 따라서 피고는 최소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조행위에 터 잡아 법률상 원인 없이 □□□ 매장에서의 공연에 따른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한 자는 저작물의 공연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 매장은 피고가 아닌 □□□ 매장 운영자가 운영주체이므로, □□□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주체도 □□□ 매장 운영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주체라거나 공연 그 자체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가 □□□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주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공연 자체의 이익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가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다) 원심은 공연의 주체가 아닌 피고가 □□□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대리점 유치 또는 피고 제품 판매 증가로 인한 매출 증대 등의 부수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리점의 유치와 피고의 매출 증대는 피고가 사용하는 영업표지의 주지·저명성, 상품의 품질, 거래조건, 점포의 위치, □□□ 매장 운영자의 모집·관리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영업상 효과이다. 따라서 □□□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피고의 대리점 수나 매출이 실제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라) 또한 원심은 자회사인 소외 1 회사가 공연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이 장래 배당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귀속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외 1 회사는 피고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한 자회사라 하더라도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 따라서 소외 1 회사가 □□□ 매장에서의 공연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이 배당 절차를 통해 피고에게 귀속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1 회사가 얻은 이익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피고에게 그 밖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명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가 □□□ 매장에서의 공연을 용이하게 한 공연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 매장에서 이루어진 공연에 관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 매장 운영자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살펴 피고가 □□□ 매장 운영자로부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명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와 더불어 □□□ 매장에서의 공연 이후 피고의 대리점의 수나 피고 제품의 판매가 실제로 증가하였는지와 그것이 □□□ 매장에서의 공연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파기 범위

원심판결에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으나, 원심으로 하여금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범위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